

주주님께

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3월 29일(금요일) 오전 09:30

2. 장 소 :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(남산동 당사 본사 3층 강당)
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(1)감사보고 (2)영업보고 (3)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의결사항

제1호 의안 : 제10기(2018. 1. 1 ~ 2018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
※ 이익배당 예정내용 : 1주당 현금 250원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【별첨 1】

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【별첨 2】

제4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 【별첨 2】

제5호 의안 :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【별첨 3】

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14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①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② 간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
6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7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: 「<http://evote.ksd.or.kr>」
모바일 주소 : 「<http://evote.ksd.or.kr/m>」

나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: 2019년 3월 19일 ~ 2019년 3월 28일
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범용 공인인증서

라.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.

***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.**

2019년 3월 일



대성에너지주식회사

대표이사 강 석 기 (직인생략)

대성에너지 정관 변경(안)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대성에너지주식회사 정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) ~ 75)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6)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</p> <p>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taegugas.co.kr)에 ...이하 동일...</p> <p>제9조(주권의 종류)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명의개서대리인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...이전 동일...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...이하 동일...</p> <p>④ 생략</p> <p>제13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</p> <p>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...이전 동일... 3월을 초과...이하 동일..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7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2조,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 <p>제18조(소집시기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...이전 동일... 3월 이내에, ...이하 동일...</p>	<p>대성에너지주식회사 정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개 정 2019. 03. 29.</u></p> <p>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) ~ 75)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76) 재보현업</p> <p>77) 보험대리 및 중개업</p> <p>78)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</p> <p>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(www.daesungenergy.com)에 ...이하 동일...</p> <p>제9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 <p>제12조(명의개서대리인)</p> <p>① ~ ②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③ ...이전 동일...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...이하 동일...</p> <p>④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16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 <p>제17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 <p>제18조(소집시기)</p> <p>①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② ...이전 동일... 3개월 이내에, ...이하 동일...</p>	<p>-개정일자(주주총회) 명시</p> <p>-업종 추가</p> <p>-업종 추가</p> <p>-업종 추가에 따른 번호수정</p> <p>-홈페이지 주소 변경</p> <p>-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</p> <p>-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</p> <p>-주식이 전자등록 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</p> <p>-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</p> <p>-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</p> <p>-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-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</p>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제20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…이전 동일… 2주 전에 …이하 동일…</p> <p>② …이전 동일… 2주 전에 …이하 동일…</p> <p>③ ~ ④ 생략</p> <p>제22조(의장) ① …이전 동일… 대표이사로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30조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내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34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1명, 대표이사 사장 1명, …이하 동일…</p> <p>제35조(이사의 직무) ① 대표이사 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은 공동으로 회사를 …이하 동일…</p> <p>② 사장, 부사장, …이하 동일…</p> <p>제41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생략</p> <p><신 설></p> <p>제47조(이익금의 처분) …이전 동일…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</p> <p>제48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에 있어서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…이하 동일…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 및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2년 3월 23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성에너지주식회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대표이사 김 영 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대표이사 강 석 기</p>	<p>제20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…이전 동일… 2주간 전에 …이하 동일…</p> <p>② …이전 동일… 2주간 전에 …이하 동일…</p> <p>③ ~ ④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제22조(의장) ①…이전 동일…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30조(이사의 수)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내로 한다.</p> <p>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제34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, 대표이사 사장, 부회장, …이하 동일…</p> <p>제35조(이사의 직무) ① 대표이사 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은 각자 회사를 …이하 동일…</p> <p>② 대표이사 사장, 부회장, 부사장, …이하 동일…</p> <p>제41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⑤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47조(이익금의 처분) …이전 동일…</p> <p>1. ~ 5. 생략: 현행과 같음</p> <p><삭 제></p> <p>제48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…이하 동일…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정관은 제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, 제12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9년 3월 29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성에너지주식회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이사 김 영 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이사 강 석 기</p>	<p>-기한 수정</p> <p>-기한 수정</p> <p>-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특정인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항 수정</p> <p>-②항 신설로 인한 수정</p> <p>-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</p> <p>-부회장 조항 추가</p> <p>-각자대표로의 변경</p> <p>-부회장 조항 추가</p> <p>-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</p> <p>-항목 정리</p> <p>-법률명 개정에 따른 수정</p> <p>-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</p> <p>-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 16일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</p> <p>-개정일자(주주총회) 명시</p> <p>-각자대표로의 변경</p>

별첨 2

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
의 안	성 명	생년월일	주 요 약 력	최대주주 와의관계	회사와의 거래내역	비고
		추천인				
제3-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	황정호	63.06.13	-서울대학교 경영학 -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(MBA) -삼성 구조조정본부 재무팀(CFO) -삼성생명 해외사업본부장 -現 대성에너지 부사장	없음	없음	재선임
		이사회				
제3-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	이성철	51.02.28	-성균관대학교 경영학 -세종대학교대학원 경영학박사 -공인회계사 -안진회계법인 근무 -現 대성에너지 사내이사	없음	없음	재선임
		이사회				
제3-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	김정주	49.10.20	-연세대학교 용재특임교수 -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수석부회장 -現 대성홀딩스 대표이사 -現 ㈜대성 대표이사 -現 대성에너지 부회장	특수관계인	없음	신규 선임
		이사회				
제3-4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	우중본	57.07.16	-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-한국전력공사 국제자금부장 -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-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-現 대성에너지 상근고문	없음	없음	신규 선임
		이사회				

제4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의 안	성 명	생년월일	주 요 약 력	최대주주 와의관계	회사와의 거래내역	비고
		추천인				
제4-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	김대수	69.07.10	-서강대학교 생물학과 -뉴욕주립대 의대 박사 후 연구원 -포항공과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-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-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과학과 교수	없음	없음	재선임
		이사회				
제4-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	상병인	69.05.24	-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-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바이오·폐기물 PD -現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다부처특위 위원 -現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-現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	없음	없음	신규 선임
		이사회				
제4-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	고완석	53.03.05	-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 -Purdue Univ. (U.S.A.) 교수 -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-현대상호중공업 사외이사 -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-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 명예교수	없음	없음	신규 선임
		이사회				

별첨 3

제5호 의안 :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 안	성 명	생년월일	주 요 약 력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고
		추천인				
제5-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	김대수	69.07.10	-서강대학교 생물학과 -뉴욕주립대 의대 박사 후 연구원 -포항공과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-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	없음	없음	재선임
		이사회	-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과학과 교수			
제5-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	상병인	69.05.24	-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-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바이오·폐기물 PD	없음	없음	신규 선임
		이사회	-現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다부처특위 위원 -現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-現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			
제5-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	고완석	53.03.05	-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 -Purdue Univ. (U.S.A.) 교수 -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	없음	없음	신규 선임
		이사회	-현대상호중공업 사외이사 -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-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 명예교수			